'창조적으로 혁신하는 대학,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 '혁신과 협력을 통한 동남권 최고 사학'



동 의 대 학 교

수 신 기업대표자(담당자)

(경 유)

제 목 동의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인턴십) 과정」기업 참여 안내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동의대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인턴십)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일정

신청구분	일정	내용
기업모집기간	2021.07.19.(월)∽08.06.(금)	신규기업 신청 및 종전 기업 재신청
학생 신청	2021.08.09.(월)~08.13.(금)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업면접 및 승인	2021.08.16.(월)∽08.20.(금)	기업 승인된 학생 참여 가능
실습수행기간	2021.09.01.(수)〜12.28(화)	16주과정, 평일 80일 과정

나. 신청방법

- 1)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을 통하여 신규등록 및 재등록
- 2) 시스템 사용방법은 붙임_2번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매뉴얼(산업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현장실습(인턴십) 운영 시 주요안내사항
- 1) 총16주 과정으로 4주 20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 2) 현장실습 운영시간은 1일 8시간(주40시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합니다.
- 3) 실습수당 미지급은 참여가 불가하며, 직무교육비율 72%~10%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 4)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미가입 시 참여불가)
- 5) 현장실습(인턴십) 과정은 근로형, 직무교육형으로 구분하며, 근로형으로 운영할 경우 별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협조바랍니다.(학생 매칭 후 별도 안내)
- 6) 본교 현장실습(인턴십)과정은 학점연계형 프로그램이며, 참여 실습생에 대한 기업 평가는 학점 부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7) 학생신청 기간에 다수의 학생들이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승인은 「기업면접 및 승인」기간을 통해서만 일괄 처리해야 합니다.
- 8) 현장실습(인턴십)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_1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인턴 십) 과정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인턴십) 과정 안내 1부
 - 2.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매뉴얼 1부. 끝.



담당자	유관철	현장실습지원센 터실장	최성우	현장실습지원센 터소장	전결07/19 김현태		
협조지	ŀ						
수신							
시행	현장실습지원(<u>네</u> 터-241 (20	021.07.19)	접수		()
우	47340 부산광역/	시 부산진구 엄종	랑로 176		/	http://www.deu.ac.kr	
전화	051-890-2954	전송 0505·	-182-6805	/ gcyoo@de	eu.ac.kr	/ 공개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인턴십) 과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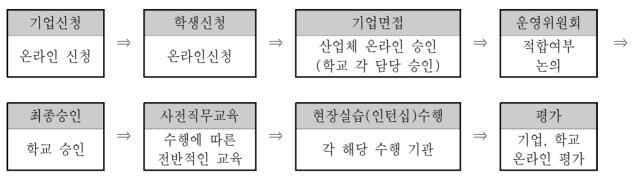


■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이란?

○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전공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현장에 파견되어 다양한 현장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현장 감각 및 적응능력향상, 진로 및 경력설계, 취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학점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 현장실습(인턴십) 운영과정

○ 현장실습(인턴십) 운영 체계도



○ 월별 추진일정

구분	주수	기업 · 학생신청	수행기간	평가	수행일수
1학기(장기)	16주	1월~2월	3월~6월	6월말	80일
하계(단기)	4주,8주	5월 ~ 6월	7월~8월	8월말	4주 : 20일 8주 : 40일
2학기(장기)	16주	7월~8월	9월~12월	12월말	80일
동계(단기)	4주,8주	11월~12월	1월~2월	2월말	4주 : 20일 8주 : 40일

※ 월별 추진일정은 본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점연계

수행주수구분	4주	8주	16주
부여학점	3학점	6학점	17학점~18학점

※ 수행기간 종료 후 기업 및 학교 지도교수 평가에서 PASS시 학점이 부여됩니다.

■ 실습기관 자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포함) 단,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및 대학교의 부속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으로 별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 실습기관 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기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기관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기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기관 등

■ 참여방법

-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https://placement.deu.ac.kr/) 회원가입 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규 신청 산업체의 경우 최초 회원 가입을 하여야 로그인 가능하며, 종전 신청자의 경우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로그인(등록된 아이디, 패스워드) 후 관련정보 확인(수정) 및 해당 현장실습 수행 학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세부 사항은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매뉴얼(산업체용)] 을 참고하여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서(직무기술서) 상의 실습기간, 실습장소 및 실습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운영 시간은 1일 8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 운영해야합니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 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직무교육비율 10%~25% 한도에서 운영_근로형)
- 실습기관이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 실습기관은 운영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학생과 협의 후 운영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하며,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산업체 개별 휴업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하여야 합니다.
-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실습 기간이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을 줄 수 있습니다.
- 예비군 훈련, 경조사,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은 수행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재택실습은 실습기간 일수 20일 기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실습수당 지급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비용"으로 실습생에게 실습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실습기관이 실습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의대학교 실습수당은 직무교육비율 72%~10%이상 산출금액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연계형, 대부분의 수행업무가 근로의 형태일 경우 25%~10%이상의 산출금액을 권장합니다. (※동의대학교 실습수당 산출금액 현황표 참조)

☞ 2021년도 실습비 산출금액 구분

① 근로형 : 25%(1,098,720원)~10%(1,318,464원)

② 직무교육형 : 72%(410,189원)~26%(1,084,070원)

※ 실습수당 금액 산출은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기준임.

- 연장·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교통비) 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수당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직무교육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 ▶ 기업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하되, 학생과 공유하여 보고서에 교육내용이 기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습생의 경우 사전직무교육 시 보고서상에 기재되도록 안내될 예정임.
 - ▶양식(예시)_직무교육 25% 적용 시

	현장직무교육(OJT) 지도계획서(4주 기준)	
주차	교육내용	직무교육시간
1주차	· 오리엔테이션, 조직체계 안내, 직무에 대한 기본지식 전달	10.5
2주차	• 현장 직무교육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 개발 교육	10.5
3주차	· 공문제작, 온라인 회의 교육 참관 등	10.5
4주차	· 전공직무교육 I , 전공직무교육 II , 실무체험 등	10.5
	합계	42

※ 직무 교육시간은 「동의대학교 실습수당 산출금액 현황표」 참고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은 실습 중 발생 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근로 형"에 대해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산재보험 가입

-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2018-69호 개정)
- 실습기관에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신고하며, 일반 근로자의 고용신고와 동일합니다.
- 실습운영 계획 중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필수가입!)
-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로 본교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실습학생에게 전달하여 학생 현장실습운영시스템내 업로드 협조)

■ 신청 자료제출 사항

- 2021학년도 2학기 신청은 본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직무기술서 등록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근로형」참여기업 서면 자료 제출

학생 매칭이 완료된 경우 "근로형"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계획서, 협약서, 평가표, 출석부에 대하여 별도 양식을 제공합니다. 기재 협조 바라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관련 양식)_별도 공지 ※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하며, 동계의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양식 통일화 함.

■ 기타사항

- **학생 신청 후 면접 및 승인(온라인)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참여에 대한 산업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교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이 이루어 질수 없으며, 현장실습(인턴십)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실습 종료 2주전에 기업 성적평가가 이루어지며, 출근부 및 보고서의 경우 교육실습생이 작성하며, 기업의 경우 확인 후 최종 승인 처리하여야 합니다.
- ※ 근로형의 경우 서면 제출된 출근부, 평가표로 반영, 직무교육형의 경우 시스템에 입력 반영.
- 사전 학생 참여 전 업무내용, 수당지급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하여 이후 민원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랍니다.

■ 문의처

- 담당부서 : 동의대학교 인재개발처 현장실습지원센터(☎051-890-4469,2954)
- 이메일 : 김난희(40383@deu.ac.kr) / 유관철(gcyoo@deu.ac.kr)
- <별첨자료> 동의대학교 실습수당 산출금액 현황표 / 현장실습 산재보험 가입방법 안내

<별첨자료> 동의대학교 실습수당 산출금액 현황

○ 주수 : 월_4주 기준

○ 2021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 8,720원

○ 동의대학교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42시간

○ 직무수행비율 100% 금액 : 금1,464,960원

○ 실습수당 산출금액 현황표

구분	직무교육비율	직무수행비율	직무교육시간	직무수행시간	실습수당
	10%	90%	17	151	1,318,464
	11%	89% 18		150	1,303,814
	12%	88%	20	148	1,289,165
	13%	87%	22	146	1,274,515
	14%	86%	24	144	1,259,866
	15%	85%	25	143	1,245,216
	16%	84%	27	141	1,230,566
근 로	17%	83%	29	139	1,215,917
도 형	18%	82%	30	138	1,201,267
	19%	81%	32	136	1,186,618
	20%	80%	34	134	1,171,968
	21%	79%	35	133	1,157,318
	22%	78%	37	131	1,142,669
	23%	77%	39	129	1,128,019
	24%	76%	40	128	1,113,370
	25%	75%	42	126	1,098,720

구분	직무교육비율	직무수행비율	직무교육시간	직무수행시간	실습수당
	26%	74%	44	124	1,084,070
	27%	73%	45	123	1,069,421
	28%	72%	47	121	1,054,771
	29%	71%	49	119	1,040,122
	30%	70%	50	118	1,025,472
	31%	69%	52	116	1,010,822
	32%	68%	54	114	996,173
	33%	67%	55	113	981,523
	34%	66%	57	111	966,874
 직	35%	65%	59	109	952,224
무	36%	64%	60	108	937,574
교	37%	63%	62	106	922,925
육	38%	62%	64	104	908,275
형	39%	61%	66	102	893,626
	40%	60%	67	101	878,976
	41%	59%	69	99	864,326
	42%	58%	71	97	849,677
	43%	57%	72	96	835,027
	44%	56%	74	94	820,378
	45%	55%	76	92	805,728
	46%	54%	77	91	791,078
	47%	53%	79	89	776,429
	48%	52%	81	87	761,779

구분	직무교육비율	직무수행비율	직무교육시간	직무수행시간	실습수당
	49%	51%	82	86	747,130
	50%	50%	84	84	732,480
	51%	49%	86	82	717,830
	52%	48%	87	81	703,181
	53%	47%	89	79	688,531
	54%	46%	91	77	673,882
	55%	45%	92	76	659,232
	56%	44%	94	74	644,582
	57%	43%	96	72	629,933
71	58%	42%	97	71	615,283
직	59%	41%	99	69	600,634
무 교	60%	40%	101	67	585,984
<u></u> 육	61%	39%	102	66	571,334
변 형	62%	38%	104	64	556,685
9	63%	37%	106	62	542,035
	64%	36%	108	60	527,386
	65%	35%	109	59	512,736
	66%	34%	111	57	498,086
	67%	33%	113	55	483,437
	68%	32%	114	54	468,787
	69%	31%	116	52	454,138
	70%	30%	118	50	439,488
	71%	29%	119	49	424,838
	72%	28%	121	47	410,189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OSA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의미

- ①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의 의미는?
 - ❖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 실습생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
 - ❖ 이에, 산재보험법 제123조는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
- ②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외 다른 4대보험 가입의무 및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도 발생하는지?
 -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 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 ①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현장실습생' 범위는?
 - ❖ 고교(일반계고, 특성화고), 대학(전문대학, 대학) 등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

- ②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의 범위는?
 - ❖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이 포함되나, 학원 등 그 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음
 - * 유급 여부, 실습기간 등 무관
 - ❖ 업무 종사가 없는 단순견학*(observation),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해외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 * 단순견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획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교육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장실습

<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공시대상 제외 현장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인턴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

③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에 포함되는지?

- ❖ 포함,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의 일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
- ④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되는 현장 실습도 포함되는지?
 - ❖ 포함, 산재보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도 포함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 신고 및 보험료납부 의무

①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 조치사항은?

- ❖ 일반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신고'와 동일하게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신고하여야 함
 - * 다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함
- ❖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신고와 동일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근로자 고용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제22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고용신고

- Ѱ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 ♥ 고용관리 메뉴 선택
- Ѿ 근로자고용신고(10501) 선택
- ♥ 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
- 근로자고용신고내역 신청구분 '산재' 선택
- №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산재만 부과' 선택 및 사유 '현장실습생' 선택
- ♥'월평균보수' 등을 입력한후「접수」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
- 「근로자 고용 신고서」제출을 통한 고용신고
- ◐️'근로자 고용 신고서' 서식 준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 哗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란 체크
- ⑤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란에 '52-03'기재
- ₩ 현장실습생 성명, 월소득액, 자격취득일 기재
- Ѿ 신고인(대표자) 서명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② 현장실습기간 종료에 따라 더 이상 현장실습생을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 조치 사항은?
- ❖ 일반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업주의 '고용관계 종료신고'와 동일하게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
- 현장실습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 현장실습 종료일 등을 신고하여야 함
- ❖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 관계 종료 신고와 동일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고용관계 종료 신고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 ♥ 고용관리 메뉴 선택
 - ₩ 근로자고용종료신고(10502) 선택
 - ₩ 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
 - 🤎 근로자고용신고내역 보험구분 '산재' 선택
 - № 산재보험 '상실일' 등을 입력한후
 - ♥'월평균보수' 등을 입력한후「접수」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 직접 제출을 통한 고용관계 종료신고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서식 준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란 체크
 - № 사업장 내용 기재
 - ₩ 현장실습생 성명, 상실연월일 등 기재
 - Ѿ 신고인(대표자) 서명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③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
 - ❖ 전년도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함
- ④ 보수총액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 수당 등 모든 금품'의 범위는?
 - ❖ 명칭에 관계없이 현장실습의 대가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
 - ❖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 외의 자(학교 등)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
 - * 임금대장,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훈련수당 금액 등을 통해 확인
 - **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해당 현장실습생의 보수 총액을 0원으로 신고
- ⑤ '무급 현장실습'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는지?
 - ❖ 보험료 산정의 일반원칙(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업종별 보험료율"이므로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0원임

사업주 신고·납부 의무 미이행 시 보상 및 제재

- 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현장실습생 고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생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 특례적용 대상인 모든 현장실습생은 사업주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②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 ❖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가 고용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을 하지 않아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10%를 사업주에게 징수
 - * 단,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 다만, 현장실습생 고용신고를 제 때 하지 못했더라도 보수총액 신고(매년 3월 15일) 시 전년도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간주하지 않음
 -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다가 현장실습생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
 - *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현장실습생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최초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하여야 함
 - ** 단,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보상범위 · 수준

- ① 현장실습생 산재 발생 시 보상범위 및 수준은?
 - ❖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요양·휴업급여 등)
 - ❖ 훈련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훈련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
- ② 학교안전공제회(고교), 한국교육안전공제회(대학)의 공제급여와 중복 보상되는지?
 - ❖ 학교안전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에 따라 현장실습을 주관하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제도는 산재보험급여 제외부분만 보상하므로 중복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현장실습생 안전공제 약관 제3장 제9조

참고

산재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급여종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요양급여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 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 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고보상기준:1일 214,402원의 70% -최저임금(1일 66,80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상병보상 연금	2년이상 요양중인 재해자 중 폐 질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 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 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연금: 1급(329일분)~7급(138일분) 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진폐보상연금: '10.11.21 도입, 기초연금(최저임금 365일분의 60%) + 진폐장해연금(1~3급월11일분, 5~7급월6일분, 9~13급월 2일분)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게 지급	연금: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 365)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진폐유족연금: '11.11.21 도입, 진폐장해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과 동일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시간몇 1억달 41 17()원				
직업재활 급여	장해1급~12급장해급여자 또는 요양중으로서 장해1급~12급이 명백한 자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금액) 직업훈련비용: 6,000,000원(1인당) 직장복귀지원금: 300,000원~600,000원(월) 직장적응훈련비: 450,000원(월) 재활운동비: 150,000원(월)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 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5,554,290원, 최저 11,097,760원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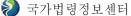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현장실습생의 성명
 -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 3. 직업교육훈련기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부칙 <제2018-69호, 2018. 9. 11.>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재검토기한(3년)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	[]에는 해!	당되는 곳에	l "√" :	班人	시를 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색싱 H. 또는 소득(보수)월액				St. Allies		적습니다	÷.							(제14	
접	수번호	MARKET	9090			접수일		200	449	100	15/197			처리	기간:	3일(고용	보험은 5일)			
-		사업장관	바리번	ō			명칭				단위기	나업장 당	병칭		영업	소 명칭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Ī			명칭				하수급	급인 관리	번호(건	설공사 등	의 미승	인 하수	급인만 해당)함)			
성명		14	국적	T			Total Care		국민연금			건강보	년 험			고:	용보험·산제	내보험			
7		인(외국인)등록번 •국내거소신고번 호				대 # 자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	자격취득 일			자격	보험료	공무원	.교직원	71.75	주 계약	계약 종료	보기	험료 나구분	일자리
파	주민(외국) 호·국내거 호				여부	액 월 평균보수) (원)	(YYYY.M M.DD)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 연금 부호	취득 부호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직종 부호	주 소정 근로 시간	연월 (계약직만 작성)	(해딩 부호	사한) 사유	안정자금 기원 신:	
1				1]예]아니오]국민연 득월 납		[]건강보험		양자 신청 보험증 기 망)	형) 사업장으로		1용보험(2 1 재 보 험	계약적 여부:]아니오)	[]예 []아니오	
2				1]예]아니오]국민연 등 월 납		[]건강보험		양자 신청 보험중 / 망)	성) 사업장으로		2용보험(2 산재보험	계약직 여부:	8 8 8/18]예]아니도	
												([]피브	하지 시호	4)				52	03		
3]]예]아니오]국민연 - 월 납투		[]건강도함	([]건경 발송 회	보험증 A 망)	나업장으로	[]산	공포함(2 사재보험	세약의 어주니	. ાખા, [[]이너코)]예]아니오	
				1]예]국민연 특월 납투		[]건강보험		양자 신청 보험증 서 망)	d) 사업장으로		용보험(기 사재보험	계약직 여부:[]예, []아니오) []예]아니오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a/m²) 또는 중질지(80a/m²)]

(제3쪽)

[자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 다) 3. 18세 미만 취득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 (기타) 41. 섬 ·벽지(사업장) 42. 섬 ·벽지(거주지) 81. 휴직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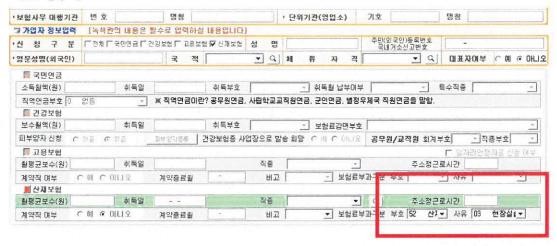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고용보 사재 보

Γ			부고	부과범위		10 10 10 10 10 10 10			부괴	범위				
ı	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9 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산재 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대상근로자	부호	산재 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대상근로자		
	51	0	0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0	0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 자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 지 않는 자)		
	52	0	×	×	×	03.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 자)	56	×	x	0	×	01.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02	Ü		Ŷ		13.항문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7	0	х	0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4	0	x	0	0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8	0	x	x	0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297mm×210mm[백상지(80g/m') 또는 중질지(80g/m')]

<EDI 접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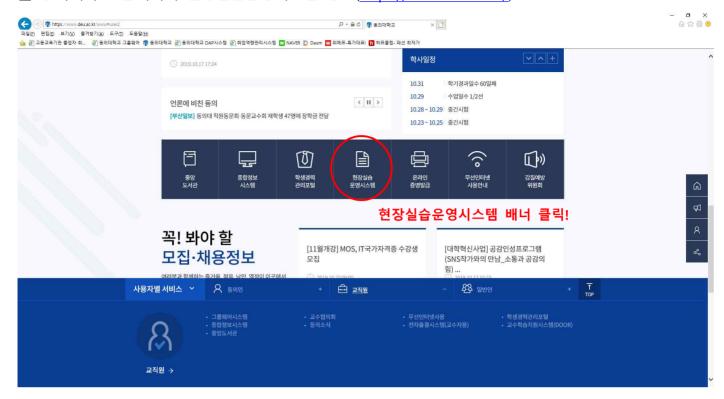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매뉴얼 (산업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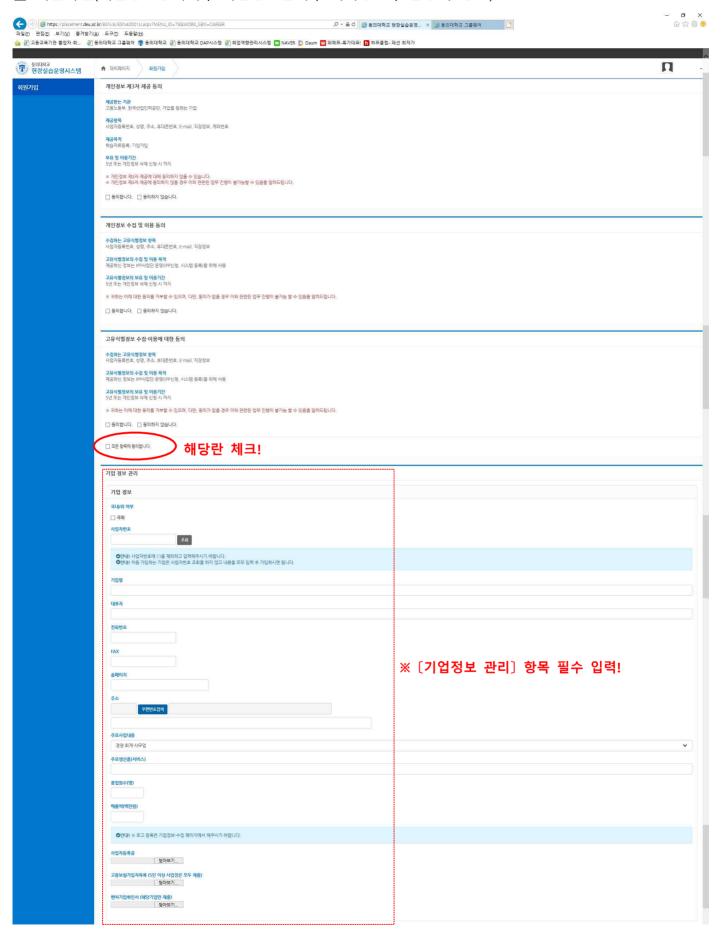
■ 동의대학교 홈페이지 현장실습운영시스템 경로(https://www.deu.ac.kr/)



■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회원가입 경로



■ 회원가입(개인정보동의서 / 기업정보관리 / 기타정보 / 담당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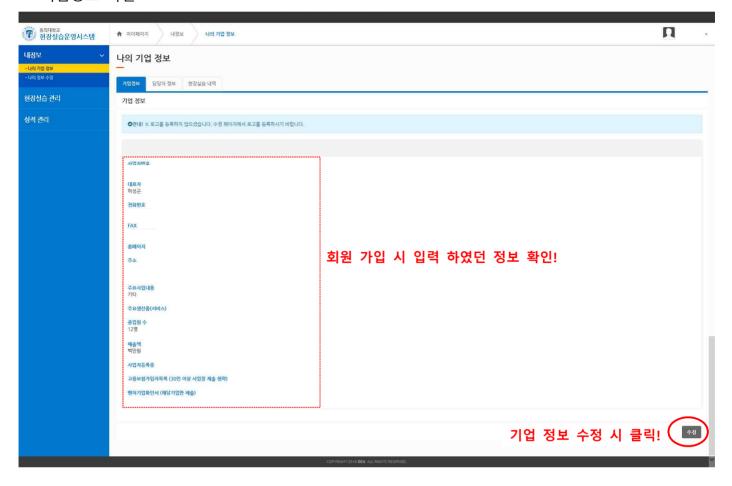
### #################################	기타 정보	
당가 경보 항명 아이디 아이디 이렇는 보석 보석 보석 보석 보석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	추원교수	※[기타 정보] 항목 선택 사항임.
당하정보 성명 이어디 제공번호 제공번호 확인 ## ## ## ## ## ## ## ## ##		
아이디 경목적인 비밀번호 부선 (담당자 정보) 항목 필수 입력! 경우 전체 (대로 기계		
비행번호 비행번호 부서 부서 ※ [담당자 정보] 항목 필수 입력! 의원 최원보호	성명	
배발번호 변형번호 확인 부석 ※ [담당자 정보] 항목 필수 입력! 착용 *대통반호 이메일		
#서 ※ [담당자 정보] 항목 필수 입력! 제대 제대 제대 제대 제대 제대 제대 제대 제대 제		
※ [담당자 정보] 항목 필수 입력! 해제보면호 제용번호	비밀번호 확인	
利用 森都と性主 利養性主	무서	※「다다자 저ㅂ〕하모 피스 이려!
식물번호 이메일	યુવ	※ (요양시 영포) 영국 글구 합국:
ুবালান্ত্র বালান্ত্র	휴대문번호	
	식물반호	
∅		
	@ A점인력 ∨	
		※ 모든 항목 입력 후 최종 등록 클릭! 🕻 🖼
※ 모든 양목 입덕 우 쇠종 등독 글딕! 🕻 🖼		NG-FT ZO IS DELI ALL MIGHTS REZERVED.

■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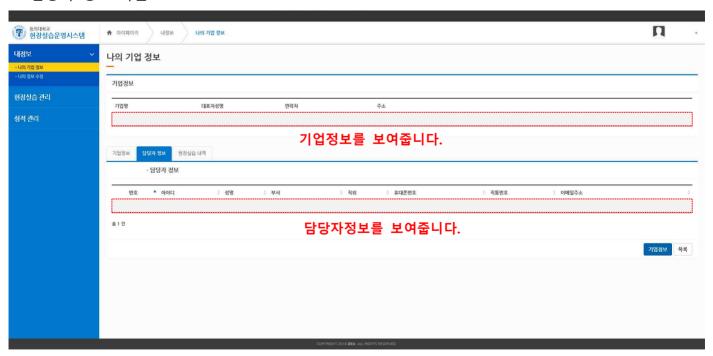


※ 회원 가입 시 입력하였던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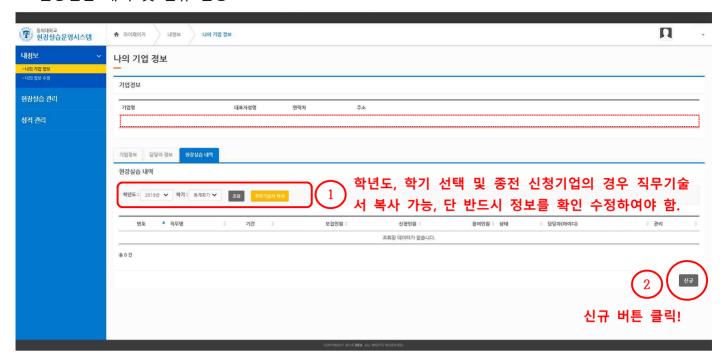
- 나의 기업 정보
 - ▶ 기업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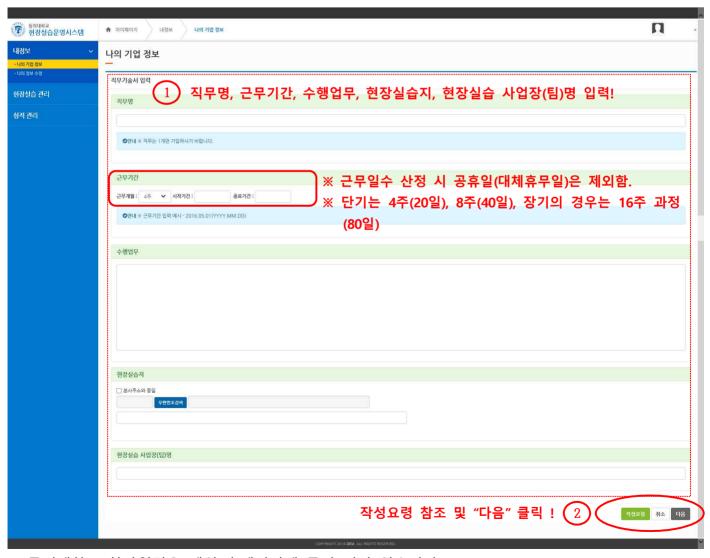
▶ 담당자 정보 확인



▶ 현장실습 내역 및 신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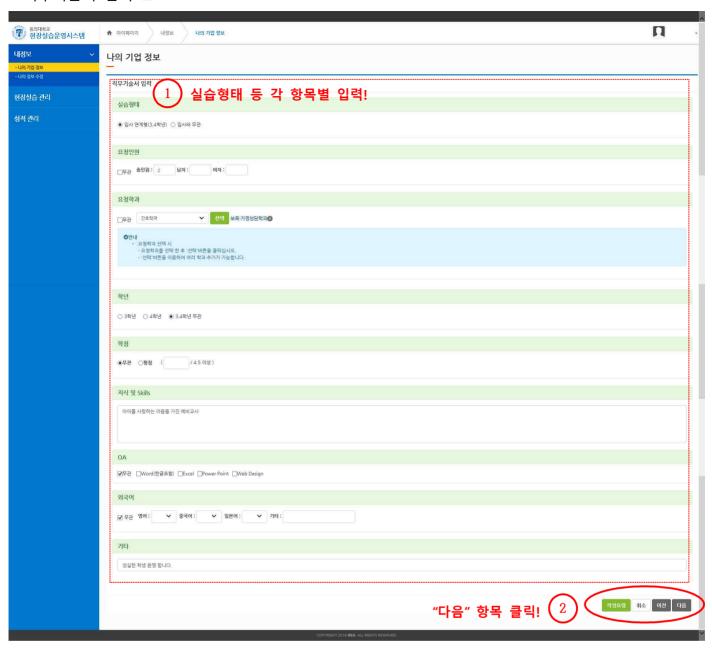


▶ 직무기술서 입력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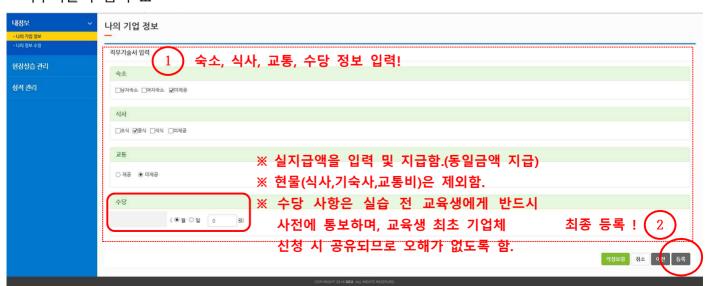


※ 동의대학교 학사일정은 메인 홈페이지에 공지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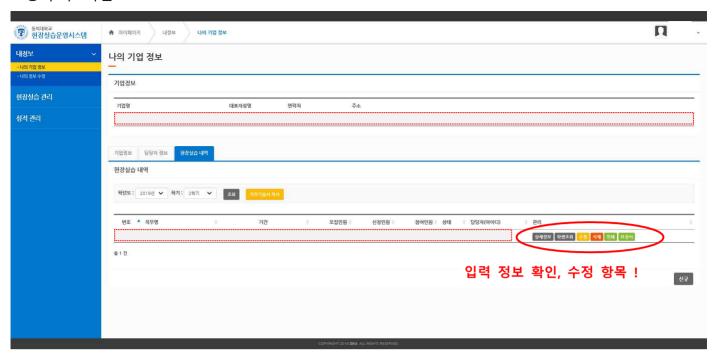
▶ 직무기술서 입력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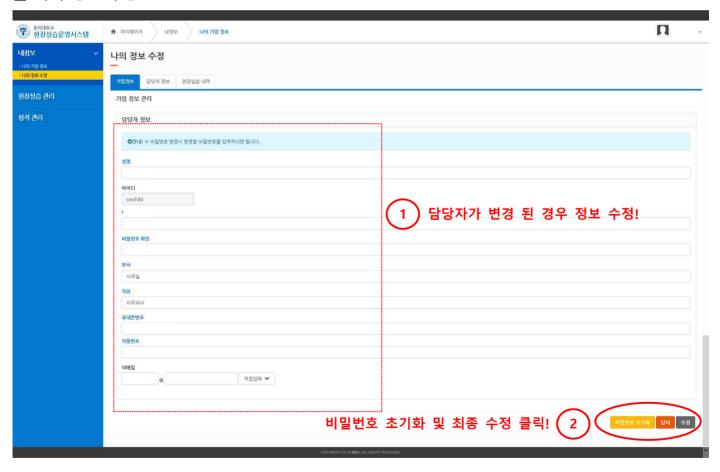
▶ 직무기술서 입력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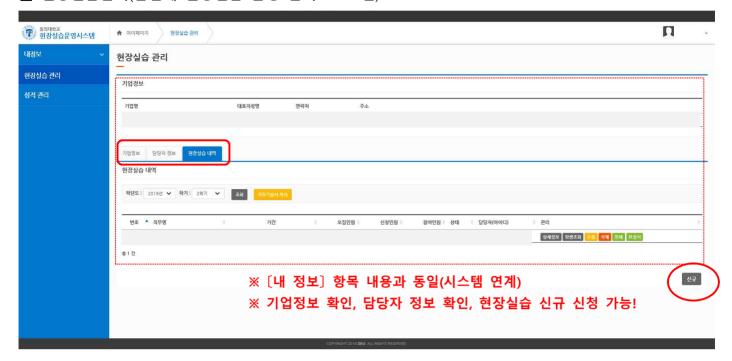
▶ 등록 후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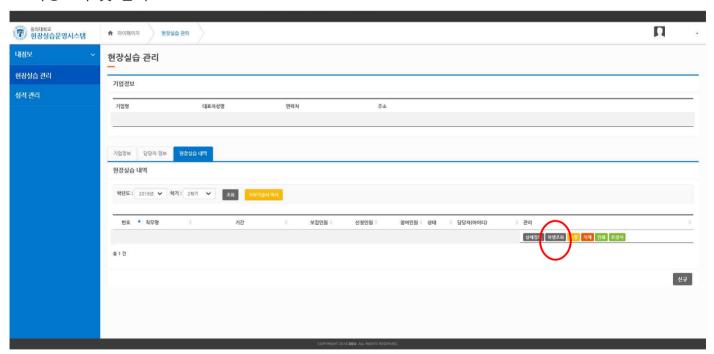
■ 나의 정보 수정



■ 현장실습관리(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관리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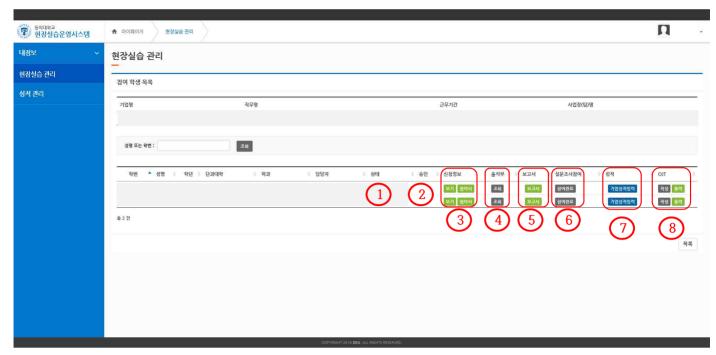


▶ 학생조회 및 관리



※ 해당 학기 현장실습(인턴십) 학생 신청 시 자동 업로드 됨.

▶ 참여학생 목록 및 관리



① 최초 상태는 학생신청이며 ②의 경우 승인처리사항입니다.(승인, 미승인 사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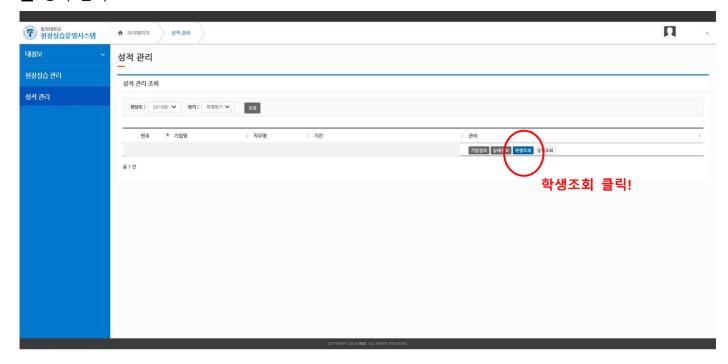


- ③ 신청정보 항목 교육실습생 정보로서 신청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기재 사항입니다. 협약서의 경우 학교, 교육실습생, 산업체 공유사항이며, 전산 승인 사항으로 일괄 처리됨.
- ④ 출석부 처리 사항으로 교육실습생 기재사항으로 출석부(출근부) 확인 후 최종 승인 하여야 합니다. 최종 승인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시 "승인취소" 처리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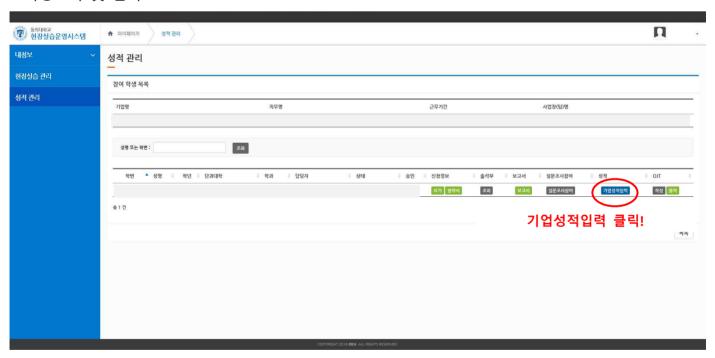


- ⑤ 보고서는 참고 확인사항으로 "출석부" 승인 처리와 연동되어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출석부" 처리사항에서 "승인취소"하여야 합니다.
- ⑥ 설문조사참여는 종료시점에 작성하며, 작성 등록 후 "참여완료" 상태로 처리됨.
- ⑦ 기업성적입력기간은 별도 하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은 별도 공지함!)
- ® OJT(On-the-Job Training) 기재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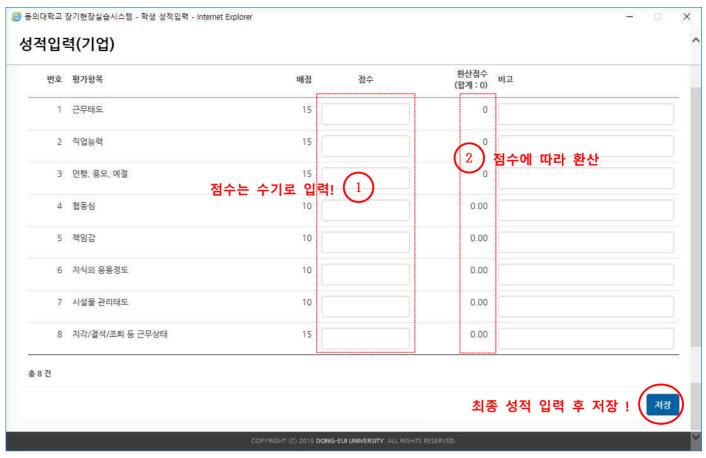
■ 성적 관리



▶학생조회 및 관리



▶성적입력



※ 총 100점 만점(산업체 80점 만점, 학교 지도교수 20점 만점이 최대임.)

